

제266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8. 2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재무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8월 28일  
전문위원 배 금 택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2019 - 58
- 나. 제 출 자 : 송순효 의원 외 6명
- 다. 제출일자 : 2019년 8월 14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함
-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와 주체를 정의함
- 다. 협력사업의 기본 방향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름을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의 범위를 정함
- 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해 규정함
- 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8. 14. ~ 8. 19.)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사업범위(안 제3조 ~ 제4조)
- 3)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 제5조 ~ 제11조)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 조성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금 조성·운용을 위한 경비 등의 사업지원 용도로 사용
  - 그 밖의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내용 규정

- 4)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안 제12조 ~ 제19조)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5) 남북교류협력 증진 공로자에 대한 포상(안 제20조)

####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평화와 상생의 남북 관계 구축으로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 교류사업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실현 가능한 사업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 시에는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과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